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의안 번호	236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이영준 의원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없음

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.)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기준) ① 하남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.)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.

제5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「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3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동조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동조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표<제3조 관련>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실비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

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
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
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1의2.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
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,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
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
바에 따른다.

2.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
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
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
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
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
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